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궤도사업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8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2213284)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궤도사업허가의 유효기간 규정(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2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221328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에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궤도사업허가의 유효기간 규정(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가 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 ⑥ (생략)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u>
<u><신 설></u>	<u>⑧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 등</u>

현행	개정안
	<u>재허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3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¹⁾에서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한 번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갱신 절차 없이 궤도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고²⁾,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궤도사업 245개 시설 중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40개(16.3%)인 상황임.

1)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50년 이내)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궤도시설 현황 >

(단위: 기수, '25.9월 기준)

구 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40년~	합계
삭도(케이블카, 곤돌라 등)	13	16	7	40	56	34	6	172
궤도(모노레일 등)	27	29	9	8				73
계	40	45	16	48	56	34	6	245
비율(%)	16.3	18.4	6.5	19.6	22.9	13.9	2.4	100

※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최근 일부 삭도(케이블카 등)사업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공공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³⁾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의 변경, 허가의 재검토 등의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궤도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먼저, 현행법상 궤도사업의 안전성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국유림, 공유수면 등을 점용하는 궤도사업의

3) 강현숙,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끊이지 않는 특혜 시비”, 옴부즈맨뉴스, 2025년2월25일자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국유림 등의 점용허가에 대한 갱신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 제19조⁴⁾에 따르면 궤도사업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매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궤도사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⁵⁾,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⁶⁾.

4)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궤도운송법」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6) 「궤도운송법」

제12조(허가·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한, 일부 궤도사업의 경우 국유림·공유수면 등의 구간을 점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궤도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하천·산림 점용에 관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국유림, 하천 등은 점용허가기간이 제한되어 있어⁷⁾ 점용허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용의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다음으로, 한국삭도협회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장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사업이고, 버스, 선박 등 교통시설은 재허가 미달 시 사업권의 양도 등이 수월한 측면이 있는 데 비해 케이블카 사업은 쉽지 않은 실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재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케이블카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항공·버스·해운 등 다른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6년)을 제외하고 운송 사업 운영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16. (생략)

②·③ (생략)

7) 국유림: 5년 이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하천: 1년, 3년, 5년, 영구(「하천법 시행령」 별표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운송관련 유사법령상 허가의 유효기간 >

구분	운송관련 된 유사법령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관련법령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관련근거	-	-	-	-
허가, 유효기간 연장	없음	한정 면허의 경우 6년	없음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궤도시설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궤도사업은 민간이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 제4조제9항에서는 재허가의 절차 등 재허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궤도사업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⁸⁾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재허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나.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개정안 제4조제9항에서 재허가 관련 절차 규정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서 허가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삭도협회

케이블카의 20년 전·후 주요 시설물 대부분을 교체하고 있고, 교체 시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고 있어 현행 법령상 허가 또는 변경 시 과도한 이익에 대하여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기간을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

또한 현행 버스, 선박 등 교통시설은 재허가 미달 시 정부의 보조, 사업권의 양도 등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케이블카 사업은 이동시설로 이러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 한다고 재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케이블카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궤도시설의 종류

구 분	사 진	내 용
	129개 사업자, 246기	
삭도 (케이블카) (65개 사업자, 172기)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모노레일 (57개 사업자, 66기)		고가(高架) 등에 설치한 단일궤도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
케이블철도 (5개 사업자, 6기)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시킴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
소형경전철 (PRT, 순천시) (1개 사업자, 1기)		고가(高架)에 설치한 궤도를 따라 1~4명이 탑승 가능한 무인경량차량을 운행하는 궤도로 PRT* , 궤도택시 , 스카이택시 등으로 불림 * PRT: Personal Rapid Transit

참고 2

삭도시설 현황('25.9월 기준)

지역	사업자수	사업자명	위치	준공일	용도	기수	비고
계	65개 궤도사업자					172	
서울	1	한국삭도공업(주)	중구	62.05.12	관광용	1	
부산	3	유창삭도(주)	동래구	66.09.26	관광용	1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서구	17.05.26	관광용	1	
		스카이라인루지부산(주)	기장군	21.06.28	관광용	2	
대구	3	대덕개발(주)	남구	74.09.18	관광용	1	
		(주)이월드	달서구	92.09.16	관광용	1	
		(주)한림팩	동구	85.10.01	관광용	1	
인천	1	해강개발(주)	강화군	18.06.02	관광용	1	
광주	1	(주)무등파크리조트	동구	78.04.01	관광용	1	
경기	11	(주)디앤오	광주시	08.11.14	스키장용	5	
		동일삭도(주)	과천시	91.05.03	관광용	2	
		한국방송공사(과천)	과천시	91.07.01	전용	1	
		선진종합(주)	남양주시	93.12.01	스키장용	5	휴지
		(재)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시	06.08.02	관광용	1	
		미래개발(주)	용인시	88.02.01	스키장용	6	휴지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용인시	88.06.01	관광용	3	
		지산리조트(주)	이천시	96.12.05	스키장용	5	
		(주)이랜드파크 베어스타운	포천시	85.12.01	스키장용	8	휴지
		파주디엠지곤돌라(주)	파주시	20.01.16	관광용	1	
		제주도해상케이블카(주)	화성시	21.11.12	관광용	1	
강원	18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춘천시	21.10.07	관광용	1	
		강원도청	정선군	16.01.21	관광용	3	
		원주시	원주시	25.02.06	관광용	1	
		강원도청(평창)	평창군	17.11.03	스키장용	1	휴지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평창군	09.07.23	스키장용	3	
		알프스리조트(주)	고성군	85.03.01	스키장용	5	휴지
		(주)동효	속초시	03.09.05	관광용	1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원주시	06.03.17	스키장용	3	
		(주)강원랜드	정선군	06.10.20	스키장용	9	
		지에스건설(주)	춘천시	02.07.24	스키장용	6	
		모나용평(주)	평창군	87.12.25	스키장용	14	
		휘닉스중앙(주)	평창군	95.11.19	스키장용	9	
		(주)소노인터내셔널	홍천군	94.11.22	스키장용	8	
		신안종합리조트(주)	횡성군	95.11.27	스키장용	8	

		(주)오투리조트	태백시	08.11.26	스키장용	6	
		화천군	화천군	21.11.26	관광용	1	
		삼척시	삼척시	17.06.30	관광용	1	
		태백시	태백시	12.06.20	관광용	2	
충북	2	청풍로프웨이(주)	제천시	19.03.22	관광용	1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증평군	19.07.23	관광용	1	휴지
충남	1	한국방송공사(대전)	계룡시	98.04.08	전용	1	
전북	4	한국방송공사(전주)	김제시	98.04.11	전용	1	
		(주)무주 덕유산리조트	무주군	90.12.09	스키장용	14	
		(주)양지대둔산삭도	완주군	90.11.16	관광용	1	
		내장산개발(주)	정읍시	80.08.18	관광용	1	
경북	6	(주)군파크레저	청도군	20.09.24	관광용	1	
		울진군	울진군	19.10.02	관광용	1	
		(주)수공단개발	경주시	21.11.10	관광용	1	
		경주월드(주) (경주지점)	경주시	97.12.23	관광용	1	휴지
		(주)호텔금오산	구미시	74.09.30	관광용	1	
		울릉군	울릉군	98.06.27	관광용	1	
경남	7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07.12.21	관광용	1	
		(주)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밀양시	12.06.21	관광용	1	
		(주)신세계개발	양산시	07.12.05	스키장용	3	
		하동케이블카(주)	하동군	22.04.01	관광용	1	
		거제케이블카(주)	거제시	21.12.23	관광용	1	
		스카이라인루지통영(주)	통영시	16.12.16	관광용	1	
		사천시	사천시	18.04.04	관광용	1	
전남	7	추월산보리암	담양군	00.04.26	화물용	1	
		(주)삼진관광개발	해남군	03.01.22	관광용	1	
		여수챌린지파크루지(주)	여수시	23.03.01	관광용	1	휴지
		목포해상케이블카(주)	목포시	19.08.22	관광용	1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여수시	14.07.23	관광용	1	
		(주)명량해상케이블카	진도군	21.09.02	관광용	1	
		(주)유심천레저산업	여수시	19.06.28	관광용	1	

참고 3

궤도시설 현황('25.9월 기준)

지역	사업자수	사업자명	위치	준공일	용도	기수	비고
계	61개	궤도사업자				73	
서울	1	서울특별시 중구청	중구	24.01.23	전용	1	
부산	4	세운철강(주)	영도구	17.09.13	전용	1	
		해운대블루라인(주)	해운대구	21.01.29	관광용	1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서구	22.04.23	전용	2	
		부산중구청	중구	14.04.04	전용	1	
대구	2	석산생태농원	군위군	16.05.09	관광용	1	휴지
		군위군청	군위군	16.07.07	관광용	1	휴지
인천	2	(주)강화모노레일	강화군	22.04.29	관광용	1	
		인천교통공사	중구	19.07.25	관광용	1	
울산	1	장생포모노레일(주)	남구	18.03.22	관광용	1	
세종	1	세종에머슨(주)	세종특별자치시	10.12.01	전용	1	
경기	6	(재)엘지상록재단	광주시	17.06.28	관광용	1	
		포천모노레일(주)	포천시	09.10.24	관광용	1	
		(주)디앤오	광주시	11.04.20	스키장용	1	
		(주)알멕스	연천군	17.05.23	관광용	1	휴지
		한강홍수통제소(남양주)	남양주시	19.06.03	전용	1	
		금호리조트(주)	용인시	24.07.05	전용	1	
강원	10	(주)하이원추추파크	삼척시	14.10.10	관광용	1	휴지
		한강홍수통제소(홍천)	홍천군	15.03.01	전용	1	
		강원개발공사	평창군	16.11.03	관광용	1	
		모나용평(주)	평창군	21.12.08	스키장용	1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	18.09.13	관광용	1	
		정선군	정선군	09.09.01	전용	1	
		삼척모노레일(주)	삼척시	10.04.01	관광용	2	
		화천군	화천군	07.11.06	관광용	2	휴지
		삼척시	삼척시	07.04.01	관광용	1	
		철원군	철원군	07.10.31	관광용	2	
충북	5	제천시	제천시	13.01.24	관광용	1	
		탄지영농조합	제천시	16.05.23	관광용	1	휴지
		영동군	영동군	17.01.11	관광용	1	휴지
		보은군	보은군	21.06.26	관광용	1	
		단양군	단양군	17.08.11	관광용	2	
충남	3	예산군청	예산군	22.10.09	관광용	2	

		서대산약용식물원	금산군	15.09.30	관광용	1	휴지
		금강홍수통제소	금산군	14.07.01	전용	1	
전북	3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15.04.14	관광용	1	
		무주군	무주군	17.11.01	관광용	1	
		남원테마파크(주)	남원시	22.06.24	관광용	1	휴지
경북	6	문경시	문경시	07.11.01	관광용	2	
		울릉군	울릉군	08.06.28	관광용	2	
		영천시	영천시	17.05.22	관광용	1	
		예천군	예천군	18.12.21	관광용	1	
		울진군	울진군	21.07.01	관광용	1	
		구미시	구미시	16.11.30	관광용	1	
경남	9	남해군	남해군	23.09.23	전용	2	
		거제시	거제시	24.12.13	관광용	1	
		진주시	진주시	23.06.07	관광용	1	
		함양군	함양군	20.02.18	관광용	1	
		(주)창원컨트리클럽	창원시	15.12.17	전용	3	휴지
		합천군	합천군	18.01.09	관광용	1	
		거제관광모노레일	거제시	18.02.02	관광용	1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19.05.02	관광용	1	휴지
		창원시	진해구	09.03.27	관광용	1	
전남	8	광양시	광양시	24.11.12	관광용	1	
		구례군	구례군	19.04.01	관광용	1	
		강진군	강진군	21.08.10	관광용	1	
		영산강홍수통제소	화순군	16.08.30	전용	1	
		완도모노레일(주)	완도군	17.04.21	관광용	1	
		나주시	나주시	16.04.07	관광용	1	
		(주)땅끝모노레일	해남군	08.07.01	관광용	2	
		순천시	순천시	14.03.31	관광용	1	
합계	61					73	

참고4

유효기간 적용 대상(전용 궤도 및 정부·공공 기관 시설 제외)

* 관광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삭도 34개, 궤도 13개 업체)

구분	허가기관	사업명 및 산업내용	운영주체	준공일	비고
1	서울 중구	삭도 사업 (관광용)	한국삭도공업(주)	'62.05.12	
2	부산 기장군	삭도 사업 (관광용)	스카이라인루지부산(주)	'21.06.28	
3	부산 동래구	삭도 사업 (관광용)	유창삭도(주)	'66.09.26	
4	부산 서구	삭도 사업 (관광용)	(주)송도해상케이블카	'17.05.26	
5	부산 해운대구	궤도 사업 (관광용)	해운대블루라인(주)	'21.01.29	
6	대구 군위군	궤도 사업 (관광용)	석산생태농원	'16.05.09	
7	대구 남구	삭도 사업 (관광용)	대덕개발(주)	'74.09.18	
8	대구 달서구	삭도 사업 (관광용)	(주)이월드	'92.09.16	
9	대구 동구	삭도 사업 (관광용)	(주)한림팩	'85.10.01	
10	인천 강화군	삭도 사업 (관광용)	해강개발(주)	'18.06.02	
11	인천 강화군	궤도 사업 (관광용)	(주)강화모노레일	'22.04.29	
12	광주 동구	삭도 사업 (관광용)	(주)무등파크리조트	'78.04.01	
13	울산 남구	궤도 사업 (관광용)	장생포모노레일(주)	'18.03.22	
14	경기 과천시	삭도 사업 (관광용)	동일삭도(주)	'91.05.03	
15	경기 광주시	궤도 사업 (관광용)	(재)엘지상록재단	'17.06.28	
16	경기 양주시	삭도 사업 (관광용)	(재)송암스페이스센터	'06.08.02	
17	경기 연천군	궤도 사업 (관광용)	(주)알멕스	'17.05.23	
18	경기 용인시	삭도 사업 (관광용)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88.06.01	
19	경기 파주시	삭도 사업 (관광용)	파주디엠지곤돌라(주)	'20.01.16	
20	경기 포천시	궤도 사업 (관광용)	포천모노레일(주)	'09.10.24	
21	경기 화성시	삭도 사업 (관광용)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	'21.11.12	
22	강원 삼척시	궤도 사업 (관광용)	삼척모노레일(주)	'10.04.01	
23	강원 속초시	삭도 사업 (관광용)	(주)동효	'70.10.12 '03.09.05	
24	강원 춘천시	삭도 사업 (관광용)	삼악산호수케이블카	'21.10.07	
25	충북 제천시	삭도 사업 (관광용)	청풍로프웨이(주)	'19.03.22	
26	충북 제천시	궤도 사업 (관광용)	탄지영농조합	'16.05.23	
27	충북 증평군	삭도 사업 (관광용)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19.07.23	
28	충남 금산군	궤도 사업 (관광용)	서대산약용식물원	'15.09.30	
29	전북 남원시	궤도 사업 (관광용)	남원테마파크(주)	'22.06.24	
30	전북 완주군	삭도 사업 (관광용)	(주)양지대둔산삭도	'90.11.16	
31	전북 정읍시	삭도 사업 (관광용)	내장산개발(주)	'80.08.18	
32	전남 목포시	삭도 사업 (관광용)	목포해상케이블카(주)	'19.08.22	
33	전남 여수시	삭도 사업 (관광용)	여수챌린지파크루지(주)	'23.03.01	
34	전남 여수시	삭도 사업 (관광용)	여수해상케이블카(주)	'14.07.23	
35	전남 여수시	삭도 사업 (관광용)	(주)유심천레저산업	'19.06.28	
36	전남 완도군	궤도 사업 (관광용)	완도모노레일(주)	'17.04.21	
37	전남 진도군	삭도 사업 (관광용)	(주)명량해상케이블카	'21.09.02	
38	전남 해남군	삭도 사업 (관광용)	(주)삼진관광개발	'03.01.22	
39	전남 해남군	궤도 사업 (관광용)	(주)땅끝모노레일	'08.07.01	
40	경북 경주시	삭도 사업 (관광용)	(주)수궁단개발	'21.11.10	
41	경북 경주시	삭도 사업 (관광용)	경주월드(주) (경주지점)	'97.12.23	
42	경북 구미시	삭도 사업 (관광용)	(주)호텔금오산	'74.09.30	
43	경북 청도군	삭도 사업 (관광용)	(주)군파크레저	'20.09.24	
44	경남 거제시	삭도 사업 (관광용)	거제케이블카(주)	'21.12.23	

구분	허가기관	사업명 및 산업내용	운영주체	준공일	비고
45	경남 밀양시	삭도 사업 (관광용)	(주)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12.06.21	
46	경남 통영시	삭도 사업 (관광용)	스카이라인루지통영(주)	'16.12.16	
47	경남 하동군	삭도 사업 (관광용)	하동케이블카(주)	'22.04.01	

국가	관련 규정
일본	○ 유효기간 없음 ○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철도사업법 30조(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1. 법률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허가, 인가에 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각호(제2호를 제외)의 1에 해당하는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각하처분을 받은 때
오스트리아 (유럽)	○ 유효기간 50년 - 허가는 공익을 고려하여 50년으로 규정(케이블카법 25조)
스위스	○ 유효기간 40년 - 케이블 설치의 경우 최대40년간 부여됨(여객운송법 제6조 여객운송허가)